

여기로 문의하고 상담하세요!



◆ 대표전화: **1357**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

◆ 전화 및 방문 문의

기관명	전화번호/팩스	주소
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	T. 02-2110-6343 F. 02-2110-0664	(13809) 경기도 과천시 권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층 1층
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	T. 031-201-6955 F. 031-201-6959	(16705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
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(북부사무소)	T. 031-820-9014 F. 031-820-9019	(11497) 경기도 영주시 병화로 1215 삼유종합지원센터 2층
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	T. 032-450-1145 F. 032-818-0206	(21632) 인천시 남동구 문봉로 82
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	T. 051-601-5188 F. 051-335-4335	(46754) 부산시 강서구 복신산당 335로 8
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	T. 052-210-0020 F. 052-283-0354	(44248)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(울산경제진흥원) 2층
대구-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	T. 053-659-2262 F. 053-654-1714	(42724)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칠단로 122-11
대구-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(경북북부사무소)	T. 054-859-8163 F. 054-859-8169	(36709) 경상북도 안동시 죽계장길 240, 안동상공회의소 2층
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	T. 055-268-2581 F. 055-262-5560	151439)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광이대로 532번길 50
광주-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	T. 062-360-9136 F. 062-366-9662	(61928) 광주시 서구 경일로 17번길 12
광주-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(전남북부사무소)	T. 061-727-5713 F. 061-727-5418	(58034) 전라남도 순천시 화동면 울촌산당4로 13,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2층
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	T. 063-210-6439 F. 063-210-6460	(54966)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대전-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	T. 042-865-6137 F. 042-865-6139	(34111) 대전시 유성구 가평북로 104
대전-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(충남사무소)	T. 041-564-3859 F. 041-564-3855	(31169)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교로 215(물당동 1418)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2층
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	T. 043-230-5323 F. 043-235-2492	(28119) 충청북도 청주시 갈매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48
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	T. 033-260-1624 F. 033-260-1629	(24424) 강원도 춘천시 판마산로 262
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(강원영동사무소)	T. 033-655-4146 F. 033-655-4149	(25440)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-11, 1층

◆ 온라인 문의

-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(<https://poll.mss.go.kr>)
-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([www.win-win.or.kr](http://www.win-win.or.kr)) 사업안내·대·중소기업 협력홍진·수·위탁분쟁조정
-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([www.kbiz.or.kr](http://www.kbiz.or.kr)) 지원센터·재조 하도급 분쟁조정

# 보복기업 입찰참가 제한

## 원스트라이크 아웃제

보복기업은 엄격히 처벌하니 불이익을 당했을 때 적극 활용하세요



## 1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으셨나요?

-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
-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행위
- 통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
-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물품을 강제 구매하게 하는 행위
- 물품 등에 흠이 없는데도 통상적인 경우보다 발주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
- 물품 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를 기피하는 행위
-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로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



## 2 저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주세요!

- 중기청 또는 공정위 (익명)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사실을 알리는 방법
-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피해사실을 게재하는 방법
- 중기청 또는 공정위 공무원에게 직접 대면, 전화 또는 이메일로 피해사실을 알리는 방법
-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, 중소기업진흥공단, 공정거래조정원,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공공기관 등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방법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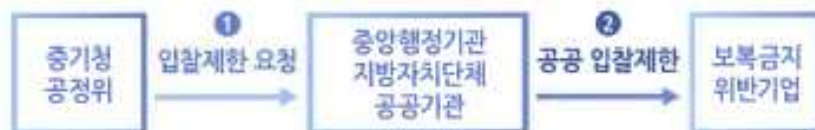
## 3 신고한 것 때문에 또 불이익을 입으셨다구요?

- 수탁기업에 대한 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행위
- 납품 기한, 검사 기준 등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
- 악의적인 소문으로 수탁기업의 업계 내 평판을 하락시키는 등 다른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직·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



##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

### 보복조치는 특히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!



- 1 중기청장·공정위원장은 보복조치를 적발하면 5.1점의 벌점을 부과하고, 상생법 제27조·하도급법 제26조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\*에게 위반기업의 입찰제한을 요청

\* 정부조직법 및 가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51개, 광역 기초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60개,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21개

- 2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각 국가계약법, 지방계약법,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반기업의 입찰제한

